

특약 변경 대비표

- 약관명 : 「급여하나 월복리 적금」 특약
- 변경 시행일 : 2019년 5월 20일(월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 : 제13조 삭제

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3조 계약의 해지방법	이 예금은 영업점,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단,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	삭제	영업점신규계좌 온라인채널 해지 가능